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4. 4. 18 선고 2023가단26948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혁제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정

변 론 종 결 2024. 3. 14.

판 결 선 고 2024. 4. 18.

주 문

-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5 지분에 관하여 2021. 11. 18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-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다툼 없는 사실, 원, 피고가 제출한 서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는 2021. 2. 2. 소외 주식회사 D(이하 ‘소외 회사’라 한다)에게 400,000,000원을 이자율 연 20%, 위 금원 중 20,000,000원에 대하여 2021. 7. 31., 나머지 20,000,000원에 대하여 2021. 12. 31.을 각 변제기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C는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, 소외 회사는 현재까지 위 채무를 전혀 변제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, C는 2021. 11. 18. 채무초과 상태에서 모친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/5 지분(이하 ‘이 사건 지분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‘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’라 한다)를 한 후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된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에 대한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.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이거나 원고가 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, 피고와 C가 해당 부동산에 함께 거주한 관계로 피고는 C의 경제사정을 잘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, 원고로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알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,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.

판사 조중래

별지